

정 관

이에이트 주식회사
(E8IGHT Co., Ltd)

2012년	05월	07일	제정
2012년	09월	17일	개정
2012년	10월	25일	개정
2013년	05월	31일	개정
2013년	09월	05일	개정
2013년	12월	04일	개정
2014년	11월	17일	개정
2015년	03월	06일	개정
2016년	02월	25일	개정
2018년	07월	30일	개정
2018년	11월	02일	개정
2020년	03월	27일	개정
2020년	08월	04일	개정
2021년	03월	26일	개정
2022년	03월	25일	개정
2023년	03월	31일	개정
2024년	03월	29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본 회사는 '이에이트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고 한다.)라고 부른다. 영문으로는 E8IGHT Co., Ltd 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1. 3D 유체 시뮬레이션 용역사업
1. 유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1. BIM 개발사업
1.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1. 통신장비 및 부품도매업
1. 연구개발업
1. 컴퓨터 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서비스업
1. 방송, 영상, 음향기기외 도소매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 3 조 [본점소재지 및 지점등의 설치]

- ① 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연구소,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 법인 등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방법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e8ight.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0,000,000 주로 한다.

제 6 조 [1주의 금액]

본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 원으로 한다.

제 7 조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기준)로 한다.

제 8 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

- ① 본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③ 본 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 8 조의1 [주식 등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8 조의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 ① 회사는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종류주식,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 종류주식, 의결권 있는 종류주식 또는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을 독립적으로 또는 여러 형태로 조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위 종류주식은 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보통주식보다 우선적인 권리를 가진다.

-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0% 이상 2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다만 비참가적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의 배당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다만 비누적적 종류주식의 경우 미배당분이 다음 사업연도로 이연되지 아니한다.
-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 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⑦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 ⑧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⑨ 우선주식의 발행과 관련하여 본 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8 조의3 [전환주식]

- ① 회사는 제8조의2에 의한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이를 주주가 보통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회사가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발행가액으로 한다.
- ③ 주주의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전환주식 1주당 액면가액이 오백원(500원)인 보통주식 1주를 부여한다. 단, 회사는 조정 후 전환비율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비율의 50%를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또는 전환주식 발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 또는 주식등가물을 발행할 경우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전환비율 조정사유,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 및 조정 방법 등은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주식의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 ⑥ 전환주식의 발행과 관련하여 본 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8 조의4 [상환주식]

- ① 회사는 제8조의2 또는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이를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가액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 때 회사는 상환할 뜻, 상환 대상 주식 및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⑤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당해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현존 이익으로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이 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⑥ 제8조의3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경우 이사회는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권 행사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 ⑦ 상환주식의 발행과 관련하여 본 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9 조 [신주발행 및 신주인수권]

-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18조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을 납입 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340조의2내지 제340조의5 및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7.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9.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9 조의2 [준비금의 자본전입]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

제 10 조 [주식매수선택권]

-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 ⑥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⑧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업무의 해태, 태만, 불성실 기타 회사에 손해를 끼칠 만한 업무태도로 인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의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1주당 행사가격은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한 평가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권면액으로 한다.

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당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까지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행사기간동안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회사가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⑦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1 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본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 [신주의 배당기준일]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동종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제 13 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 14 조 [주주명부]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 15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다만,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16 조 [주주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서 제3항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 3 장 사 채

제 17 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적 제휴를 하고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기타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무의결권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하며 사채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 ④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채발행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결의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주식으로의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전환사채발행에 있어서 본 조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8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적 제휴를 하고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기타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및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으로 하며,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채발행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에 있어서 본 조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8조의3 [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8조의4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9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제16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제16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 20 조 [소집]

- ①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본 회사는 매 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21 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정관 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2 조 [소집통지]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때에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때에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⑧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3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4 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5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등]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기 위한 발언, 기타 유형력의 행사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6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7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8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9 조 [의결권의 행사]

-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0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 ② 특별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 31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임원

제 32 조 [이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 33 조 [이사의 선임]

- ① 본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②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3 조의1 [대표이사의 선임 및 직무]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33조의2 [감사의 선임·해임]

-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4 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재임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전에 끝날 때에는 그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 35 조 [임원의 보선]

- ① 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되었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가 되고 또한 업무집행상 지장이 없을 때는 보결선임을 보류 또는 다음 정기주주총회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 ② 전항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제 36 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본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7 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감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책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8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 ① 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 ②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⑦ 감사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⑧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38조의2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9 조 [보수와 퇴직금]

- ①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②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③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제 40 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1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다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전항에 의한 소집권자가 아닌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이사회는 의장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의장은 제2항과 전항의 소집권자로 한다.
- ⑤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1 조 [이사회 결의방법 및 의사록]

- ① 이사회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1조의2 [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41조의3 [위원회]

-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 1. 내부거래위원회
 - 2. 기타 필요 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설치한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40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장 회계

제 42 조 [영업년도]

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3 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 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44 조 [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수입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 45 조 [이익배당]

-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46 조 [배당금 지급청구권 소멸시효]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시효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이익으로 귀속된다.

제 7 장 기타

제47조 [업무규정]

본 회사는 업무의 수행 및 기타 경영상 필요한 규정 및 세칙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정할 수 있다.

제48조 [규정 외 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상법 및 기타의 법령에 따른다.

부 칙(2022.03.25)

제 1 조 [시행일]

- ① 본 정관은 2022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3항 단서조항, 제8조의1, 제11조 제3항 단서조항, 제14조, 제16조 제4항, 제18조의4, 제19조 단서조항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 2 조 [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 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 3 조 [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 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23.03.31)

제 1 조 [시행일]

① 본 정관은 2023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채발행의 한도 계산시 정관 개정 이전에 발행된 사채는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본 정관 개정 이후 발행되는 사채만을 기준으로 새롭게 위 한도를 계산한다.

부 칙(2024.03.29)

제 1 조 [시행일]

① 본 정관은 2024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024년 03월 29일

이에이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진 현

